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6호
- 나. 발의자 : 김희걸 의원
- 다. 발의일자 : 2014년 11월 17일
- 라.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부여하다”를 “주다”로 하며 “취하다”를 “밟다”로 하고 “현저한”을 “크게”으로 하며 “취·창업”을 “취업·창업”으로 하고 “적합하도록”을 “맞도록”으로 하며 “경감”을 “줄이다”로 하고 “교부결정”을 “발급결정”으로 함. (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 다. 기타 :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조항별 신·구 대비표〉

조항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 제2항 중	부여할 수	줄 수	
제8조 중	취할 수	밟을 수	
제8조 제4호 중	현저한	뚜렷한	
제11조 제3호 중	취·창업	취업·창업	
제15조 중	취할 수	밟을 수	
제15조 제3호 중	현저한	크게	
제19조제4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제21조 제2항 중	적합하도록	맞도록	
제22조 제1항 중	경감할	줄일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경감	줄임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경감	줄임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경감한다	줄인다	
제22조 제2항 중	경감할	줄일	
제22조 제2항 제1호 중	경감한다	줄인다	
제22조 제2항 제2호 중	경감한다	줄인다	
제22조 제2항 제3호 중	경감한다	줄인다	
제29조제2항 중	교부결정	발급결정	
제29조제2항 중	취할 수	밟을 수	

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우선, 안 제19조제4항의 내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시행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음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
 - 다만, 현행 조례 내용 중 “취할 수”를 “뺄 수”로 개정(안 제8조와 안 제15조, 안 제29조제2항 관련)하려는 것과, “현저한”을 “크게”로 개정(안 제15조 제3호)하려는 것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현행의 용어를 유지하더라도 그 해석상 어려움이 크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행 조례의 입법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이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정비 기본원칙에서도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기본원칙에 따르면, “알기 쉽고 친숙하며 일반화된 현대적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에 있어 입법 의도와 다르게 이해 될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한 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상기 제시한 용어들은 법제처 기준 정비 용어 및 국립국어원 권장 순화어를 고려해볼 때 현행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조사됨.

- 덧붙여, 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경감” 또는 “경감한다” 등 관련 용어를 “줄임” 또는 “줄인다” 등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개정 본문안에는 현행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경감한다”의 경우 여기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이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개정안의 본문 내용 작성에서의 단순 실수로 파악되어짐. 따라서 만약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상기의 개정안 본문 내용에서 탈락된 용어는 의안의 정리를 통하여 교정·보완 될 필요가 있음.